

2026년도 의료시 보건의료인 직무교육사업 운영기관 모집 공고

한국보건복지인재원은 『2026년도 의료AI 보건의료인 직무교육사업』을 수행할 기관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, 관심있는 기관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6년 3월 16일
한국보건복지인재원장

1. 사업개요

- (사업명) 의료AI 보건의료인 직무교육사업
- (사업기간) 협약체결일로부터 ~ 2026. 11. 30. 까지
- (사업목적) 병원 현장 중심의 AI 실무인재 양성을 통해 의료기관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 및 지역별 AI 기술수준의 편차를 완화
- (사업내용) 의료인(의사, 간호사 등), 의료기사, 전산·AI 전문인력 등 대상 교육 기획, 운영, 실적 관리
- (기획) 인재원 제공 기본교육과정 기반, 병원별 맞춤형 기획 최소 3과정
 - ☞ 기본교육과정 참고하여 사업유형 선택지원(사업운영·관리기준 中 PART 2참고)
 - ① (통합형) 기본교육과정(①~⑤) 모두를 교육하는 유형
 - ② (선택형) 필수(①~②) + 선택(③~⑤) 중 N개 교육하는 유형
- (운영) 기관별 최소 200명 (과정별 최종수료인원 합산 기준)
- (성과) 교육만족도 최소 60점(100점만점), 수료율 최소 80%(교육등록인원 비 수료자 비율)

2. 지원대상 및 요건

- (지원기관 수) 6개 내외(예정) * 예산 범위나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
 - (지원자격) 종합병원 이상 의료 AI지식, 교육인력 등 인프라 보유 및 교육 운영할 수 있는 기관 (종합병원 이상 주관으로 컨소시엄 허용)
 - 의료 AI 교육을 위해 교육수요에 맞는 맞춤형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운영하는 제반과정을 총괄하여 관리할 수 있는 병원
 - 원내, 원외 교육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 인프라를 보유
 - 의료 AI에 대한 자체 교육 프로그램 개설 가능
 - * 의료AI 혁신 기업·기술 관련 교과목 반영, 의료AI 이론·실습 프로젝트 운영, ZOOM 수업 등 비대면 라이브 수업은 과정 전체 시간의 30% 미만으로 구성 권장
 - AI 전문 인력(개발자, 활용 경험이 있는 의사 등)을 보유
 - * 교육과정 기획·운영 인력, 조직이 갖추어진 기관
 - 병원이 소재한 권역/지역 의료기관 협력 네트워크 보유(교육생 모집 홍보 등)
 - * 권역별 의료AI 학습 수요를 반영하여 교육과정 개발·운영이 가능한 기관
 - 연구중심병원, '25년 운영기관(또는 '26년 의료AI 컨설팅 참여기관), 참여병원(수도권 이회 지역의료기관) 3개 이상 확보 시 가산점 부여
- 📎 산학협력단으로 사업계획 제출 시, 주 사업수행기관이 병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(예, 병원장 지원확약서 등) 제출 필수
- (지원제외)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
 - 기업의 부도
 -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,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
 -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,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
 - 파산·회생절차·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이 이루어진 경우
 - * 단,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 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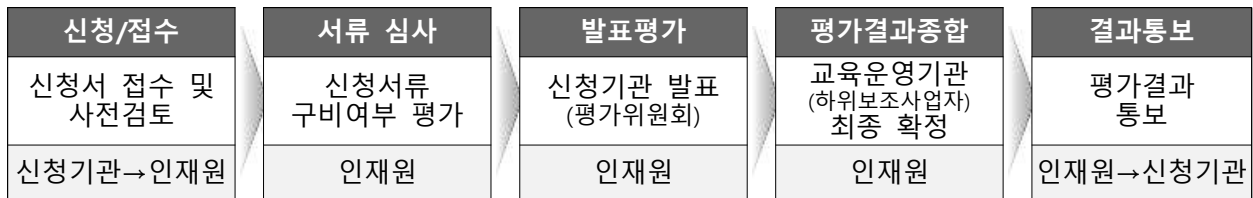
- 최근 2년 연속 결산 재무제표상의 완전자본잠식, 또는 감사의견이 “의견거절” 또는 “부적정”인 경우
- (지원금액) 정부지원금, 자기부담금 합산 3.2억원 이내 제출, 교육운영기관별 지원하는 통합형·선택형에 따라 사업비 차등 지급 (사업운영관리기준 中 PART 2참고)
 - * 통합형의 경우 2.5억~3억, 선택형의 경우 인재원이 책정한 ①~⑤별 교육비 단가 기준으로 제출한 사업비 조정 가능, 통합형 제출 시 교육운영기관 선정 유리
 - * 교육운영기관별 사업비(정부지원금 및 자기부담금) 중 자기부담금 20% 이상 (현금≥현물) 필수, 현물 부담 시 기관장 날인된 현물 출자 확인서, 현물 부담액 선정근거 필수(감가상각, 내용연수 등)
- (교육운영기관 성과목표) 목표를 효과과정을 자율적으로 기획하되, 교육 운영기관별 최소 운영 기준 달성할 수 있도록 교육 정량지표, 기관 특수성을 반영한 정성지표를 자율적으로 구성하여 제시
 - 정성지표는 선정 단계에서 타당성 검토·협의 후 협약 시 최종 확정

| 내용 | | 목표 |
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정량 지표 | 의료AI 활용 교육 프로그램 개발 | - [최소요건] 교육프로그램 과정 3개 이상 · 통합형 : 기본교육과정 ①~⑤ 모두 기획·운영 · 선택형 : 필수(①~②)외 선택(③~⑤) 중 N개 기획·운영 ※ 학습 수요 맞춤을 위해 필요한 교육프로그램 유형 추가 구성 가능 ※ 단, 온라인 교육은 교육 프로그램 부가활동으로 전체 시수에 미포함 ※ 인재원이 제공하는 의료 AI역량모델, 수요조사 결과, '25년 의료AI 컨설팅 결과 등 반영한 현장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개발 수 |
| | 의료AI활용 전문 인력 양성 | - [최소요건] 교육운영기관별 연간 200명 이상 양성 · 초급(①~②) : 최소 100명 / · 중·고급(③~⑤) : 최소 100명 ※ 과정별 최종수료인원 합산 기준 |
| | 교육과정 수료율 | - [최소요건] 교육과정 참여인원 대비 수료인원 비율 80% 이상 ※ 교육과정 구성에 따라 단계별 참여인원 대비 수료인원으로 관리 (이탈자 최소화 관리 목적) ※ 교육 프로그램 진도율 80% 이상 참여한 교육생을 수료자로 판단 |
| | 교육수료생 만족도 조사 | - [최소요건] 교육생 만족도 최소 60점 이상(100점 만점 기준) ※ 인재원 제공하는 5점 척도 설문지 활용하여 평균만족도 점수 도출 ※ 산정방식 : 평균 만족도 점수(5점 척도) × 20 |
| | 지역확산 | - [최소요건] 수도권 외 지역의료기관 참여 30% 이상 · 산정방식 : 수도권 외 지역의료기관 수료인원/전체 인력양성 수료인원 |
| | 홍보 | - [최소요건] 사업기간 내 월별 1회 · 유튜브, 보도자료, 블로그, SNS, 기관지 등 사업관련 홍보 |

| 내용 | 목표 |
|------|--|
| 정성지표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최소요건 교육운영기관 특수성을 반영한 성과목표 설정(2개 이상 선택) · 시프로젝트 교육 결과물 병원 내 현장적용 등 연계, 우수 사례 확산(성과교류회 우수사례 발표 등) · 수도권 외 지역의료기관, 협회, 학회 협력 교육운영 · '25년 또는 '26년 의료시컨설팅 결과 반영 성과 (교육기획 반영 또는 시프로젝트 주제 선정 및 문제해결 등 적용) · 교육사업 내 강사, 교안, 표준교재, 데이터, 온라인 콘텐츠 활용 |

3. 평가 및 선정기준

○ (평가절차) 신청기관의 제출서류 중심 구두발표 통한 평가 병행



○ (평가방법) 신청기업이 제출한 서류를 중심으로 구두발표를 통한 평가

- (서류심사) 신청서류 구비여부 평가

- (발표평가) 신청기관 총괄책임자의 구두 발표

* 발표평가는 4월 15일(수), 서울지역에서 실시 예정(일정, 장소 추후 안내)

* 서면심사·발표평가가 원칙이나, 상황에 따라 발표평가 생략 가능

* 불가피한 사유로 총괄책임자 발표가 불가능한 경우, 인재원과 사전 협의요망

- (최종선정) 점수순위에 따라 선정, 평가점수 평균 60점 미만 시 탈락

○ (발표시간) 신청기업별 15~20분, 질의응답 10분(상황에 따라 변동가능)

○ (최종선정) 선정결과는 개별통보하며, 평가결과에 따라 선정된 기관은 5일 이내에 협약을 확정하며, 협약 포기 시 차순위 기관을 선정

* 평가결과, 경쟁률 등을 고려하여 최종 정부지원액은 조정 가능

○ (선정 취소 및 참여제한) 교육운영기관은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선정 취소 또는 참여 제한 처리

- 신청기업이 허위, 위조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
- 계약체결 전 과제 수행을 포기하거나 선정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
- 선정 평가위원회 평가 결과를 사업계획서 상에 반영하지 않은 경우
-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기한 내에 계약체결을 하지 않거나,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
- 교육운영기관 및 대표자가 채무불이행 및 부도, 폐업 등의 경영 악화로 사업수행 여건이 되지 않는 경우
- 교육운영기관에 의해 사업 진행이 지연되어 사업 선정 당시 기대하였던 성과를 거두기 곤란하거나 완수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

○ (평가기준) 사업계획 적정성, 추진역량 및 전략, 기대효과 등 종합 평가

| 평가항목 | | 평가내용 |
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|
| 사업계획의 적정성 (55점) | 사업목표의 적정성(10점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사업목표 및 지표의 실현가능성 · 사업목표 및 세부계획의 적절성 · 기관 자율교육 계획의 적절성 |
| | 추진전략 및 추진체계(15점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추진조직 및 운영체계의 적절성 · 수요자 중심의 교육운영체계 적절성 · 교육과정 설계 및 개발의 전문성 · 교육내용에 따른 교육방법의 적정성 등 |
| | 당해 사업 추진내용의 적절성(30점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의 우수성 - 의료SI 역량모델·교육체계 반영 정도 - 강사, 표준교재 활용계획 수준 - 현장 수요 파악(사전실태조사, 수요분석)을 위한 기획 - 의료SI 기술 및 활용 내용이 반영된 프로그램 구성 및 교육 계획의 구체성 · 교육생 모집, 홍보, 교육생 관리(수료 등), 교육생 피드백 방법 구체성 · 네트워킹 및 협업 프로그램 구성도(병원·기업·지역병원 연계) · 의료SI 교육 지역 확산 계획 |
| 추진역량 및 전략 (30점) | 추진주체역량 및 교육수행여건(20점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신청기관의 사업추진 의지 및 적극성 · 의료 SI 관련 교육사업, 보조금 사업 수행 경험 - 참여인력이 의료SI 활용분야 경험 보유 정도 등 · 실습 교육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활용 수준(실습장비 서버 등) · 교육강사 풀 및 해외협력 네트워크 정도 · 전담인력 운영계획 및 역할 분장 적정성 |
| | 신청사업비의 적정성(10점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정부지원금·자기부담금 구성 적정성 · 세부사업비 사용계획 구체성 · 사업기간 내 집행가능성 |

| 평가항목 | | 평가내용 |
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|
| 기대효과 (15점) | 성과창출 계획(7점) | · 프로젝트 등 교육성과 창출 가능성 · 교육(또는 프로젝트)결과로 조직 변화 가능성 |
| | 사업홍보·확산 전략(8점) | · 산업·학계·협회 연계 홍보·확산 · 대국민·의료계 홍보 전략 |
| 가점 (6점) | 지원기관 전문성(2점) | · 연구중심병원 |
| | 사업 연속성(2점) | · '25년 운영기관, '26년 의료SI 컨설팅 참여기관 |
| | 지역확산 협력(2점) | · 참여병원(수도권 외 지역의료기관) 3개 이상 확보 시 |

4. 사업추진 절차

| 추진내용 | 추진기관 | 추진일정 |
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
| 공고 및 신청접수 | 한국보건복지인재원 | ~4월 10일 |
| ↓ | | |
| 공모내용 평가 및 결과통보 | 한국보건복지인재원(선정평가위원회) | ~4월 17일 |
| ↓ | | |
| 협약체결, 보조금 교부, 킷오프 | 한국보건복지인재원-교육운영기관 | ~4월 30일 |
| ↓ | | |
| 중간점검 | 한국보건복지인재원 | ~7월 31일 |
| ↓ | | |
| 성과교류회 | 보건복지부, 한국보건복지인재원 | ~11월 27일 |
| ↓ | | |
| 사업종료 및 결과보고 제출 | 교육운영기관 | ~11월 30일 |
| ↓ | | |
| 보건복지부 최종 결과보고 | 보건복지부 | ~12월 31일 |

5. 신청기간 및 방법

- (공모기간) 2026. 3. 16.(월) ~ 4. 10.(금), 14시까지 (신청마감 시간 엄수)
* 마감일 14시 이후 신청·제출·수정 불가, 등기우편은 마감일 14시까지 도착분에 한함.

- (신청방법) **파일 전자우편, 인쇄본 직접방문 또는 등기우편접수 모두 제출**

☞ 사업계획 신청서 접수 경로

- ① 전자우편 : mediai@kohi.or.kr
- ② 방문/우편 :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의료SI교육팀 409호

- (제출서류)

- 공문, 사업계획서, 사업신청서 및 증빙을 포함한 전문 수록 파일

(한글 hwp), 인쇄본(10부)

* 신청서, 계획서 등 주요서식 참고, 증빙서류는 사업계획서 뒤 붙임 제출

- 사업자등록증(또는 법인등기부등본)

○ (문의처)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의료AI교육팀

- (의료AI 직무교육) 043-710-9363/9367, mediai@kohi.or.kr

- (의료AI 조직역량강화 컨설팅) 043-710-9033, pol90110@kohi.or.kr

* 전화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, 메일로 문의 시 순차적으로 회신예정

6. 행정사항

○ (수정계획서) 선정 결과 통보 후 5일 이내 수정계획서 작성 및 제출

○ (사업계획 변경) 변경이 필요한 경우, 인재원(복지부)에 사전 변경 승인을 받은 후 시행

○ (사업실적보고서) 교육운영기관별 수행결과보고(과정별 운영결과보고서, 정산보고서가 포함된 사업비 집행내역서) 제출

○ (사업비 교부)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및 「국고보조금 통합 관리지침」에 따라 교부

○ (사업비 편성) 「의료AI 보건의료인 직무교육 사업 예산편성 원칙 및 회계처리 기준」에 따라 예산 편성 **(사업운영관리기준 중 PART 5참고)**

○ (사업비 집행) 사업비는 승인된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용하며,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인재원(복지부)의 사전 변경 승인을 받은 후 사용

* 예산 편성, 집행, 증빙, 변경, 정산 등은 e-나라도움을 사용해야 함.

○ (사업비 정산)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및 「국고보조금 통합 관리지침」에 따라 사업수행기관은 사업비 정산을 위탁 정산기관(인재원 지정기관) 의뢰 후 예산집행 내역 정산을 받아야 하며, 집행 잔액 및 이자, 불인정 금액은 반납

* 총 사업비(국고보조금+자기부담금) 기준 회계정산보고서 제출하며 총사업비 기준,

정산수수료 산정/반영, 정산 수수료는 자기부담금(운영비-일반수용비)에 편성, 회계 정산수수료는 교육운영기관 선정, 최종사업비가 결정된 후 별도로 안내 예정

- **(홍보 및 성과확산)** 사업 수행을 통한 주요 성과 홍보 시 보건복지부와 인재원 지원 사항을 표시하며, 인재원에서 추진하는 성과조사, 성과 교류회, 포럼, 세미나 등 필수 참여 및 적극 협조
- **(의료AI 조직역량강화 컨설팅)** 교육운영기관으로 선정된 병원 중 AX 고도화 전략이 필요한 병원은 사업계획서(양식) 내 '9. 의료기관 AX조직 역량강화 컨설팅 사업 수행 계획'을 작성하여 신청하며, 직무교육을 통해 향상된 의료AI 역량이 조직 내 AX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권장

* 컨설팅 수혜기관 4곳 선정 예정이며, 별도 예산 소요 없음.

- **(전용 홈페이지 구축·운영)** 교육운영·관리를 위해 의료AI 보건의료인 직무교육사업 전용 홈페이지(edu.kohi.or.kr/mediiai)를 구축·운영하며, 교육운영기관별 담당자 권한 부여 후 사용가능, 교육운영기관은 반드시 교육 신청, 수수료, 만족도조사, 강사 등록은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처리

* (주요기능) ① 과정개설 및 운영, 학습관리, 게시판관리, ② 수강신청, 교육생 학습 현황 확인, 수수료처리 ④ 만족도 실시·교육생 공지

7. 유의사항

- 필요 시 신청기관에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, 이에 따라 신청 기관은 응해야 하며, 제출된 자료는 계획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.
- 제출된 사업계획서는 반환하지 않으며, 평가결과 및 선정에 관한 사항은 비공개함.
- 신청서와 관련된 일체 비용은 신청기관이 부담, 모든 내용은 객관적 입증이 가능해야하며, 허위이거나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또는 선정을 취소함.

* 사업계획서 내용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는 별첨으로 제출 요망